

건축사법시행령중개정령

◎ 대통령령 제11, 706호

건축사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2 제1호 및 제2호중 “이수하고”를 각각 “마치고”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나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6년 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

제4조 제2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그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제4조 제2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중 “1부”를 각각 삭제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

제6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 2 (면허증등의 갱신) ① 건설부장관은 건축사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갱신하며, 그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증 및 면허수첩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 갱신기간이 만료되기 30일전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원증명서
2. 면허증 및 면허수첩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기간내에 갱신을 받지 아니한 면허증 및 면허수첩은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에 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건축사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수당과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5조의 제목을 “(단독건축사사무소의 업무범위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 본문중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를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로, 동항제1호중 “관계법령에의 저촉여부”를 “관계법령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로, 동항제2호중 “설계도서에의 합치여부”를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로 한다.

- ① 단독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가 할 수 있는 설계와 공사감리업무는 10층이하로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5층이하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하로 한다.
- ② 종합건축사사무소의 경우 소속건축사를 책임건축사로 정하여 업무를 행하게 하는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수 이상의 건축사를 당해 건축물에 대한 책임건축사로 지정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규모가 10층이하이거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1인 이상
2. 건축물의 규모가 10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2인 이상

3. 건축물의 규모가 20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3인 이상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건축사의 연대책임) 종합건축사사무소 개설자(책임건축사를 정한 경우에는 책임건축사)가 법 제23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범위는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에 관한 당해 건축사사무소의 업무에 관련된 건축관계법령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의 이행으로 한다.

제27조중 “건축사사무소내에”를 “건축사사무소안의 보기쉬운 곳에”로, “등록증을”을 “등록증 및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기준표를”로 한다.

제28조 및 제29조를 제29조 및 제30조로 하고,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 (보수기준의 공고) 건설부장관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업무에 관한 보수의 기준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변경인가를 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29조 (종전 제28조) 제2항중 “(합동사무소의 개설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속건축사)”를 “(종합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사무소소속건축사)”로 하고, 제30조(종전 제29

[별표 2] 건축사사무소의 등록기준(제23조 제1항 관련)

구분	등 록 기 준		
	건 축 사	건 축 사 보	사 무 실
단독	1인 이상	2인 이상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종합	3인(인구 10만이하의 시 및 군이하의 행정구역인 경우에는 법률 제3,242호 건축사법중개정법률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2급 건축사 1인을 포함할 수 있다) 이상	4인 이상(건축분야의 건축사보 3인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토목·전기·기계·화공·통신·환경관리·에너지·국토개발 또는 안전관리분야중 1인 이상의 기술계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1인 이상)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3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보수교육의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보수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그 교육대상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를 삭제하고, 제32조 내지 제34조를 제31조 내지 제33조로 하며,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 (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당해 위반행위·과태료금액·납부기간 및 수납기관과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②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하되, 그 부과 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35조 제1항 제3호중 “제24조 및 제27조”를 “법 제24조 및 법 제27조”로 하고, 동항제4호중 “제29조”를 “법 제29조”로, 동호중 “폐쇄명령 및 등록말소”를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 및 건축사사무소의 등록말소”로 하며,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 (수탁기관의 장의 보고) 건설부장관은 법 제3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의 시행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 계획 및 그 결과를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별표1]의 제목 공사감리의 구분·대상·방법 및 범위 다음에 “(제2조관련)”을

추가한다.

[별표1] 중 1. 종합공사감리란의 대상란을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으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건축사면허증등 갱신기간의 만료일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위 반 내 용	근거법조문	과태료금액
1	본적·성명·생년월일 또는 근무처를 변경한 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3월미만인 때	법 제8조 제3항 10,000이하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미만인 때	법 제8조 제3항 20,000이하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이상인 때	법 제8조 제3항 50,000이하
2	건축사의 사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3월미만인 때	법 제8조 제3항 30,000이하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미만인 때	법 제8조 제3항 50,000이하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미만인 때	법 제8조 제3항 100,000이하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이상인 때	법 제8조 제3항 300,000이하
3	건축사의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이 1월미만인 때	법 제11조제3항 50,000이하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이 3월미만인 때	법 제11조제3항 100,000이하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미만인 때	법 제11조제3항 200,000이하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이상인 때	법 제11조제3항 250,000이하
4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사항(성명·건축사사무소소재지·건축사보)을 변경하거나 건축사사무소를 휴업 또는 폐업일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1월미만인 때	법 제27조제1항 20,000이하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3월미만인 때	법 제27조제1항 50,000이하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미만인 때	법 제27조제1항 100,000이하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이상인 때	법 제27조제1항 150,000이하
5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의 사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3월미만인 때	법 제27조제1항 30,000이하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미만인 때	법 제27조제1항 50,000이하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미만인 때	법 제27조제1항 100,000이하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이상인 때	법 제27조제1항 300,000이하

에 관한 경과조치) 1980년12월 31일 이전에 교부된 건축사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갱신기간의 만료일은 제 6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6년 6월30일로 한다.

③ (다른법령의 개정) 기술용역육성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에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 2조 제 4호에서 “그 공장의 운전 전에 필요한 건축물”이라 함은 기계실·변전실과, 사무실·창고·휴게실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부속건축물로서 특수공장건축물의 건설기간중에 건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이유

건축사법이 개정(1984. 12. 31 법률 제 3,767호) 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아울러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종래에는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등에서 건축분야의 과목을 전공한 자로서 일정기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에 한하여 건축사보의 자격을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

는 고등학교 또는 3년제고등기술학교 등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자로서 일정기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등에 대하여도 새로이 건축사보의 자격을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을 완화함(령 제2조의 2 제 3호).

나. 종래에는 건축사의 자격시험중 제 1차시험의 시험과목을 건축구조·건축시공 및 건축법규의 3 과목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建築史를 추가하여 시험과목을 늘림(령 제 8조제 1항 제 1호 라목).

다. 종래에는 건축사사무소의 등록기준으로서 단독건축사사무소의 경우에는 건축사보 1인 이상, 전용면적 30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건축사사무소의 대형화를 유도하여 건축기술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건축사 1인 이상, 건축사보 2인 이상과 전용면적 30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하였고, 새로이 인정된 종합건축사사무소의 경우에는 건축사 3인 이상, 건축사보 4인 이상과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함(령 제23조 제 1항 및 별

표 2).

라. 단독건축사사무소의 업무범위는 그 규모가 10층이하로서 연면적 1만 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그 규모가 5층이하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에 한하도록 하고, 종합건축사사무소의 업무범위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함(령 제 25조 제 1항).

마. 건축물의 내실있는 설계와 공사감리 업무의 확보를 위하여 종합건축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소속건축사를 책임건축사로 정하여 업무를 행하게 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규모가 10층이하이거나 연면적 1만 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1인 이상, 건축물의 규모가 10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 건축물의 규모가 20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 3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책임건축사를 지정하도록 함(령 제25조 제 2항).

바. 행정관청이 행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절차 및 그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령 제34조 및 별표 3).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

◎ 건설부령 제387호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조의 2중 “도시계획구역중”을 삭제하고, 동조중 “동일건물”을 “복합용도(부속용도를 제외한다)의 건축물(이하 “복합건축물”이라 한다)”로 하며, 동조중 “제29조”를 삭제한다.

제 4조 제 1항 제 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 2호중 “도시계획구역중”을 삭제한다.

1. 공동주택의 지하층에 설치하는 대피시설·체육시설 및 주차시설과 공동주택의 피로티에 설치하는 주차시설

제 4조 제 1항에 제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특정기구정비지구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안에서의 주택이외의 시설과 공동주택의 복합건축물의 지하층에 설치하는 대피시설·체육시설 및 주차시설과 동 복합건축물의 피로티에 설치하는 주차시설

제 4조 제 2항중 “제 1항 제 2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물로”를 “공동주택에 제 1항의 시설을 설치하여 복합건축물”로 하고, 동조제 3항 제 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11항 제2호의 일반업무시설

제 5조 제 2항을 삭제한다.

제 7조 본문중 “계벽”을 “경계벽”으로 한다

제 8조 제 1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 2항중 “기준척도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를 “기준척도로 하여 정하여야 하며, 옥상 및 발코니의 난간은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 본문중 “적합하여야 한다.”를 “적합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품질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 1호를 삭제하며, 동조제 2호 및 제 3호를 각각 제 1호 및 제 2호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난방구획등의 설치) ① 중앙집중난방 방식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난방열이 각 세대에 균등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난방구획을 구분하되, 4층이상 10층이하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2개소이상, 10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10층을 초과하는 5개층마다 1개소를 더한 수 이상으로 난방구획을 구분하여야 하며, 각 난방구획마다 따로 난방용 배관을 하여야 한다.

② 중앙집중난방 방식으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난방열량을 측정하는 계기를 설치하거나 난방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은 에너지소비절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난방열량을 측정하는 계기와 난방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함께 설치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설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제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폭이상의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다만, 대지안의 전체 세대수가 20세대미만인 경우라도 도로의 길이가 35미터를 넘는 때에는 그 도로의 폭은 6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대지안의 전체 세대수	도로의폭(미터)
20세대미만	4
20세대이상 300세대미만	6
300세대이상 500세대미만	8
500세대이상 1,000세대미만	12
1,000세대이상	18

제14조 제 2항 본문 및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영 별표4 제 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안에 설치하는 도로(이하 “단지내 도로”라 한다)의 폭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폭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당해 단지내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미만인 경우라도 그 길이가 35미터이상이고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그 폭은 6미터 이상으로 하고, 막다른 도로의 끝부분에는 자동차가 회전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제 2항의 표의 구분란중 “당해 도로를 이용하는 주택의 규모”를 진입도로에 이르는 단지내도로(최단거리의 것을 말한다)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로 하고, 동조제 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 4항 내지 제 7항을 각각 동조제 3항 내지 제 6항으로 하고, 동조제 3항(중전의 제 4항)중 “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도로”를 “단지내도로”로 하며, 동조제 4항(중전의 제 5항)중 “도로”를 “단지내도로”로 하고, 동조제 5항(중전의 제 6항)중 “대지안의 도로”를 “단지내도로”로 하며, 동조제 6항(중전의 제 7항)중 “도로”를 “도로(단지내 도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5조중 “세탁장등”을 “다용도실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에는 악취 및 배수의 역류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제 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 2항중 “시의 행정구역안인 경우”를 삭제한다.

① 주택에는 세대마다 전화설치장소(거실 또는 주된 침실을 말한다)까지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내통신선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 제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액화석유가스를 배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세대마다 가스공급설비를 하여야 하며, 그밖의 지역에서는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외기에면한 곳에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취사와 난방겸용의 연탄아궁이식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중 “대지안의 도로의 양측에는 서로 엇갈리게 하여” “단지내 도로에는”으로 하고, 동조에 제 2항을 다음과

② 폭 8미터이상의 단지내 도로에 설치하는 보안등에는 외부의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유치원 또는 새마을유아원)

① 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에는 유치원 또는 새마을유아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여야 하며, 그 대지면적은 세대당 0.3제곱미터 이상 0.9제곱미터이하의 비율로 하되, 그 최소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대지안의 다른 용도의 건축물안에 유치원 또는 새마을유아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 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또는 새마을유아원이 있는 건축물에는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서실, 예·체능계강습소 및 기술계강습소(사무관리분야에 한한다)를 함께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치원 또는 새마을유아원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은 그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제24조 제 2항중 “5미터이상”을 “5미터(개구부가 없는 측벽은 3미터) 이상”으로 하고, 동조제 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어린이놀이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놀이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공동주택의 규모가 500세대이상인 경우에는 놀이터안에 수세식 공중변소(대변기 1, 소변기 2, 세면기 각 1개이상) 및 음수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터로부터 통행거리 200미터이내에 이용 가능한 공중변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의 2중 “도시계획구역중”을 삭제하고, 동조중 “동일건물로”를 “복합건축물”로 하며, 동조에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놀이터는 건축물의 내부, 피로티 및 옥상에 설치할 수 있으며,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외벽등 충분한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25조 본문중 “주택”을 “공동주택”으로, “판매용건축물”을 “의료시설을 판매시설”로, 이를 “의료시설의 설치희망자”를 “의료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로 하고, 동조제 1호중 “주택의 규모”를 “그 규모”로, 동조제 2호중 “주택의 규모”를 “그 규모”로, “의원 1개소이상”

을 “의원 또는 병원 1개소이상”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일반목욕장) ① 세대별로 냉·온수를 공급하는 목욕시설을 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1천세대이상 건설하는 대지안에는 일반목욕장을 건설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일반목욕장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거나, 일반목욕장을 판매시설의 건축계획에 포함하여 건축하고 일반목욕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그 대지면적은 세대당 0.2제곱미터이상 0.6제곱미터이하의 비율로 하되, 그 최소면적은 30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목욕장이 있는 건축물에는 이용원·미용원 및 탁구장·태권도장·헬스크럽등의 운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목욕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은 그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이내 이어야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체육시설) ① 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안에는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이상의 운동장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 안에 배드민턴장·배구장·농구장 또는 정구장등을 1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의 출입구로부터 통행거리 1킬로미터이내에 학교 또는 공공운동장(유료로 사용하는 운동장을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천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안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운동장시설외에 수영장 1개 또는 정구장 1면을 설치하여야 하며, 2천세대이상인 경우에는 2천세대를 넘는 1천세대마다 정구장 1면이상을 추가 설치하거나, 소년축구장 또는 소년야구장을 1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공동저수시설)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안에는 음용수의 수질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음용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비상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지하저수조 또는 지하양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1. 지하저수조는 세대당 3톤(고기수조

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0.3톤이내의 고기수조 저수량을 포함한다) 이상이어야 하고, 50세대마다 1대 이상의 수동식펌프를 설치하거나 비상전원 및 이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지하양수시설은 일일양수량이 세대당 0.1톤 이상이어야 하고, 세대당 0.3톤이상의 저수조를 설치하여야 하며, 양수에 필요한 비상전원 및 이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 공동주택에는 동별로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4조 제 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시설이 있는 건축물에는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제조장·장 의사 및 동물병원을 제외한다)·병원 및 관리사무소를 함께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시설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은 그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판매시설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까지 설치할 수 있다.

[별표 1]의 제목 단위평면 및 각부위의 첫수 다음에 “(제 5 조 제 1 항 관련)”을

추가하고, 동표의 거실 및 침실의 단위평면의 기준척도란중 “1번”을 각각 “각번”으로 하고, 동표의 욕실(화장실 겸용인 경우를 포함한다). 부엌(식당겸용인 경우를 포함한다.) 및 식당의 단위평면의 기준척도란중 “1번”을 “각번”으로, “30센티미터”를 “10센티미터”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다스트슈트의 규격 및 마감등의 기준 다음에 “(제 9 조 제 2 항 관련)”을 추가한다.

[별표 4]의 제목 내부마감재료 다음에 “(제 11 조 관련)”을 추가하고, 동표중 “다만, 품질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재료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주택의 건설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별표 5] 놀이시설의 종류별 규격 및 설치기준(제24조제 3항 관련)

놀이시설의 종류	규격	설치기준
그네	높이 2미터이상, 2인용	○50세이하인 경우에는 2종이상, 100세대이하인 경우에는 4종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세대이내의 증가마다 1종의 시설을 추가하되 그네·미끄럼 또는 씨소오를 우선하여 설치하고, 같은 장소에서 동일시설의 중복은 피한다. ○놀이시설의 주변에는 두께 30센티미터 이상의 모래를 깔아야 한다. ○놀이터에는 파고라 및 5인용 긴의자 6개(50세대미만인 경우에는 3개이상) 이상을 설치한다.
미끄럼	높이 2미터이상, 상계판의 넓이 2제곱미터이상, 활주면의 너비 0.5미터이상, 착지판의 길이 0.6미터이상, 활주면 2개이상	
씨소오	씨소오판의 높이 0.5미터이하, 씨소오판의 길이 3미터이상, 씨소오판 3개이상	○놀이터마다 1개소이상 설치한다.
기타놀이시설	어린이의 유희·건강·안전 및 정서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고 모험·창조적인 놀이가 가능한 시설	
모래판	넓이 6제곱미터이상, 모래 두께 0.3미터이상	